

근로자카드발급절차

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안내

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, 근로자직무능력향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2014년 4월 15일부터 **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**으로 통합되었습니다.

■ 지원대상

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중이여야 하며 아래조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.

- 1) 이직 예정의 근로자
 - ※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- 2) 무급휴직·휴업자
 - ※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- 3) 비정규직 근로자
 -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
 - *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 - *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 -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 - 일용근로자
 - *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[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- 4)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- 5)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
- 6)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
■ 자비부담통합

- 1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한도 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
- 2.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율

중소기업	대규모기업	고용보험 가입자영업자
- 정규직 20% - 비정규직,이직예정자,무급휴직자 0%	- 비정규직, 무급휴직자 0% - 이직예정자, 50세이상 정규직, 3년간 훈련 미참여자 0%	0%



■ 근로자카드신청방법(온라인신청)

- 1. HRD-NET 회원가입
 - 1) www.hrd.go.kr 접속 및 회원가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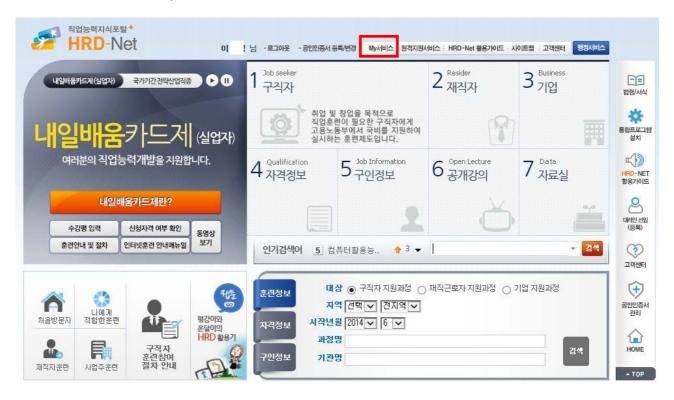
2)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





2. 카드신청

1) 로그인후 상단메뉴 My서비스



2) 행정지원서비스 →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→ 근로자 카드신청 → 공인인증서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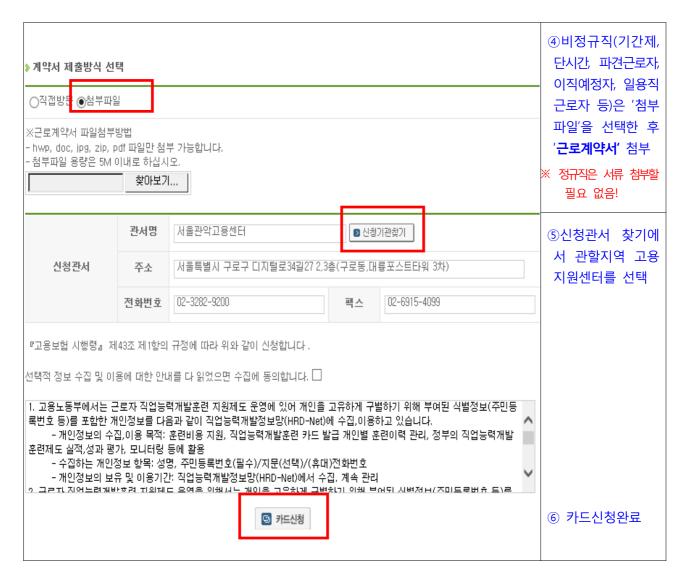




3) 카드신청서 작성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신청							
※ 온라인카드신청 근무자 제외)하셔(
🖸 근로자 직업능							
▶신규 근로자 카드							
발급기관	◉ 신한카드 ○ 농협카드						
▶ 신청인		_					'신한카드' 또는 '농
이름	0		영문이름				협카드'를 선택한 후 신청인 내용확인
	156-826 무편번호칮	7					
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							
e-mail	@						
전화번호	070-8672-5484	휴대전화	휴대전화				
※ 회원정보의 SMS수신여부가 수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카드발급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							
회원정보는[]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> 고용형태							
시민	소속사업장명 기업규드 (소속사업장번호)		상시 근무일수 근로자수 (일용직일경		₽)	② 고용형태에서 소속사업장명 앞의	
	법인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						선택 단추를 클릭
(10882084330)							
						_	
○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○ 「근로기준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□ 다르기 제2 등 등에 관한 병료 이 이번 로로자							
□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파견근로자 □ 일용근로자 □ 이직예정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) □ 구분 □ 이직예정근로자(대기업) □ 무급 휴업.휴직자 □ 50세 이상 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제외)						③ 구분에서 본인의	
						고용유형 선택	
○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○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							
	○ 고용보험 가입 자양	3업자 	V #3	병비/지혜호려 이고이	<u>J) Oru</u> tioi rull f	<u>¢</u> ⊦0 1	
			<u> </u>	2=1(입째 천단) 비타	7) 	[[]	





4) 카드발급

- TM(텔레마케터)발급 : 신용/체크카드 모두가능,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
- 은행영업점 즉시발급: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후 영업점 본인방문 발급
- 은행영업점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, 수령후 다음날부터 카드사용가능(출결가능)
- ※ 체크카드 즉시 발급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확인서 수령 후, 해당 영업점(은행)에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. 즉시 발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보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.



■ 근로자카드신청방법(고용센터방문신청)

<u>관련서류(하단참조) 및 신분증</u> 지참 후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하여, <u>비치되어 있는 신청</u> 서류 작성!!

고용센터에서 7일 이내로 심사결과 통보. 고용센터 방문 후 즉시발급확인서 수령(체크카드 기준)한 후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카드 발급!!

※ 대상별 구비서류
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 근로자: 근로계약서

- 일용근로자 : HRD-Net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(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)

- 이직예정의 근로자 :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

- 무급 휴직, 휴업자 : 휴직원,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,의결 통보서

- 정규직인 경우 해당 없음

■ 카드 발급 기간

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은행, 농협중앙회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즉시 발급 할 수 있으며,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카드 발급기간하고 비슷하게 소요됩니다.